

대배심에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의 공소사실내용을 보도한 신문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

The King v. The Evening News (1925) 2K. B.

사실개요

Hobbs 라는 사람이 런던 치안판사에 의하여 절도 및 사기범행을 모의하고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중앙 형사법원에 회부되어, 1925. 2. 3. 담당판사(Recorder)는 보도진들과 일반인들의 방청이 허용된 가운데, 대배심에 그 사안에 대한공소사실 내용을 진술하였다. 법원 소속의한 공식 속기사와 신문발행인 협회에서 파견나온 한 보도자가 참석하여 그 공소사실에 대한 대체로 같은 내용의 속기록을 각 작성하였는데, 위판사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계사인 Hobbs 는 한 인도 출신 귀족으로부터 재산을 절취 및 편취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범죄를 공모하고, 그 결과 15 만파운드 파리 수표 2 장을 받았다. 증거에 의하면, 그 공모자는 Hobbs 와 Newton 및 Arthur 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에 의하면 Robinson 이라는 한 부인을 이용하여 그녀를 내세워 위 귀족과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금원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즉, 위 Robinson 부인으로 하여금 파리의 한 호텔에 방을 얻어 위 귀족과 동침을 하게 하였고, 1919. 12. 25. 위 Robinson 의 남편으로 가장한 Newton 이 위 침실에 들어가 위 동침장면을 적발하도록 한 것이다. Newton 은 매우 분개한 척 하였고, Arthur 는 위 귀족으로부터 그 절충권한을 위임 받아, 며칠 후 런던에서 위 Hobbs, Arthur 및 Newton 은 모의끝에 위 Hobbs 는 15 만 파운드짜리 수표 2 장을 작성하여 위 귀족과의 합의에 따라 수표 1 장은 바로 현금으로 바꾸었고, 나머지 1 장에 대하여도 인도로부터 그 수표자금을 송부 받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 속기록은 다음과 같은 판사의 진술을 담고 있었다 즉, 15 만 파운드 또는 30 만 파운드는 위 Robinson 의 정조의 대가로서는 너무 큰 금액이고, 아마 그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위 귀족은 정치적인 것이든 외교적인 것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위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극력 피하려 하였고, 이 영악한 사기꾼들은 이와같은 사정을 알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위와같이 자금을 움켜쥐게 된 것이다 이어서 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즉, 위 범인들은 편취한 위 수표금 15 만 파운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 위 Robinson 부인은 그 여자의 역할에 비하여 소액이라 할 수 있는 2 만 파운드만을 받고, 나머지를 위 Hobbs, Newton, Arthur 의 3 인이 나누어 가졌고, 그 후 Midland 은행에 위 Robinson 의 남편명의로 입금된 나머지 15 만 파운드짜리 수표도 1920. 1. 16. 위 Hobbs, Newton, Arthur 와 Robinson 부부와의 회합결과, 위 Robinson 부부는 그 중 2 만 1 천 파운드의 몫만 받아가기로 낙착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위 Robinson 부인의 남편은 위 Midland 은행을 상대로 15 만 파운드 중 나머지 수표금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이르렀는데 - 이것도 파렴치한 소송으로서 결국 패소하였지만 - 위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각되게 되었고, 위 Hobbs 는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속될 때 위 Hobbs 는 자기에 대한 위 혐의사실이 모두 터무니 없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건의 증거들은 특색이 있고, 나(Recorder)는 감히 말하거니와 -물론 이는 결국

당신들(배심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Hobbs 는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아니 될 대규모의 파렴치 사기만의 일당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 사건 공소에 의하여 위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속기록은 이 사건 Evening News 지를 비롯한 가 언론기관에게 보내어졌고, 1925. 2. 3. 저녁 Evening News 지는 위 속기록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로 편집하여 보도하였다. 「판사와 Robinson 부인」, 「형사법원의 돈과 정조에 대한 논평」, 「Hobbs 의 역할」, 「의심의 여지 없는 대사기단의 일당」, 「나는 감히 말하거니와 Hobbs 는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파렴치 사기단의 일당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라고 오늘 형사법원의 Ernest Wild K.C.판사는, 나이 60 의 회계사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한 귀족으로부터 돈과 고가의 유가증권을 기망 및 협박을 통하여 받아낸 혐의로 Hobbs 라는 사람을 대배심에 기소하면서 말하였다. 「Robinson 부인」 위 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Robinson 부인이 파리에서 위 귀족과 동침하다가 발각된 내용을 설명 하면서, 「15 만 파운드 또는 30 만 파운드는 위 부인의 정조의 대가로는 너무 큰 금액이고, 그 보다 훨씬 적은 돈이 합당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이 사기단들이 위 귀족이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력 피하려는 사정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파렴치한 소송」 지 수표금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이르렀는데 - 이것도 파렴치한 소송으로서 결국 패소하였지만 - 위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각되게 되었고, 위 Hobbs 는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속될 때 위 Hobbs 는 자기에 대한 위 혐의사실이 모두 터무니 없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건의 증거들은 특색이 있고, 나(Recorder)는 감히 말하거니와 -물론 이는 결국 당신들(배심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Hobbs 는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아니 될 대규모의 파렴치 사기만의 일당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 사건 공소에 의하여 위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속기록은 이 사건 Evening News 지를 비롯한 가 언론기관에게 보내어졌고, 1925. 2. 3. 저녁 Evening News 지는 위 속기록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로 편집하여 보도하였다. 「판사와 Robinson 부인」, 「형사법원의 돈과 정조에 대한 논평」, 「Hobbs 의 역할」, 「의심의 여지 없는 대사기단의 일당」, 「나는 감히 말하거니와 Hobbs 는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파렴치 사기단의 일당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라고 오늘 형사법원의 Ernest Wild K.C.판사는, 나이 60 의 회계사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한 귀족으로부터 돈과 고가의 유가증권을 기망 및 협박을 통하여 받아낸 혐의로 Hobbs 라는 사람을 대배심에 기소하면서 말하였다. 「Robinson 부인」 위 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Robinson 부인이 파리에서 위 귀족과 동침하다가 발각된 내용을 설명 하면서, 「15 만 파운드 또는 30 만 파운드는 위 부인의 정조의 대가로는 너무 큰 금액이고, 그 보다 훨씬 적은 돈이 합당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이 사기단들이 위 귀족이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력 피하려는 사정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파렴치한 소송」

피고인측의 변론

이에 대하여 편집자나 직접 그 발행사무를 담당했던 신문사 직원들은, 위 신문발행인협회의자료는 언제나 믿을 만한 정보원이었고, 더욱이 함께 입수한 공식속기록의 기재와 비교해 보아도 실질적으로 틀리는 점이 없었으므로 위 속기록 내용대로 신문에 게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위 언론인들의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첫째, Evening News 지는 대배심에의 공소사실 내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신문이 재판절차의 진실된 진행내용을, 그것이 사법절차이고 공개되어있는 한, 아무리 그 공표된 내용이 어느 개인에게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현재 확립된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사건 보도는 판사의 공소내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게재하였다. 비록 위 보도는 원래의 소추내용과 사소하게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신문의 편집자와 발행인들은 판사가 사용한 언어를 검토하여 다른 용어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공소사실을 그대로 장황하게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단축 보도 신청인에 대한 재판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더 클 수도 있다.

정부측 대리인의 주장

구속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유지 되어야 한다. 첫째, Evening News 지는 아무리 그 내용이 공정하고 정확하다 할 지라도 법원에 의하여 대배심에 회부된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도할 권한은 없다. 법원의 절차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절차가 사법적인 것이고, 공개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대배심에 회부된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절차는 원래의 배심과는 달리 단순히 계속된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법원에의 공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공개절차도 아니다. 그리고 대배심에서의 공소사실의 진술절차와 같은 재판의 예비단계 절차까지 그 내용이 보도된다면 오히려 사법절차가 교란되어 의혹과 불신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보도는 판사의 소추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알린 것이 아니다. 위 공소사실에서 사용된 예컨대, 「증거에 의하면……)이라든지, 「……라고 한다」와 같은 문구, 또는 「이것은 배심원들이 판단할 사항으로서……」라는 등의 표현을 모두 생략하였고, 위 Hobbs 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는 내용도 이 사건 보도는 게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심할 여지가 없는 대사기단의 일당』이라는 표제를 큰 활자체로 실음으로써 위 Hobbs 가 유죄 라는 편견을 주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신문보도가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이 실제로 사법절차의 공정을 침해했느냐가 아니라, 침해할 우려가 있었느냐이다.

HEWART 수석법관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보도가 첫째는, 위 공소사실의 내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못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대배심에 의한 소추절차는 그 보도에 대하여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는 점이다. 두번째 이유를 먼저 보건대, 우리 영국에서는 과거 오랫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가 행하여졌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대배심에 대한 공소사실의 진술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대하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Lewis v. Levy 사건에서 Campbell 수석판사는 「비록 치안 판사가 어느

기소될 만한 범법행위에 관한 예심절차에서 그가 비밀리에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는 사건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물론 위법하지만, 이 경우에도 치안판사가 일반에게 공개된 채 조사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정의실현에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여(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건에 적용될 것이다), 조사실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사절차는 공개된 사법절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 법리는 결코 여태까지 번복된 적이 없다. 그리고 위대한 Lawrence 판사는 Rex v. Wright 사건에서,

「그러한 절차의 보도가 관련된 개인에게는 불이익을 줄지도 모르지만, 사법절차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Reg.v. Gray

사건에서 Fitzgerald 판사는, 「정의구현을 위한 공개보도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은 여론의 압력과 지지라는 두가지 측면에 바탕을 둔 안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압력이란 판사가 무절제하고 부패하여 부적당한 심리를 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측면을 말하고, 그 지지란, 사법정의를 순수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나중의 재판단계에서는 보다 엄숙하게 심리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초 기 단계에서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관련된 개인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개인의 불편함은 그 보도에 의하여 얻어지는 지대한 공공이익에 비하여는 극소하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고 말하고 있다. 나는 앞에서 본 이러한 법리는 바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남은 문제는 과연 이 사건 보도가 공정하고 정확한 것이냐에 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신문에 의하여 발표된 보도내용과 공식 속기사의 속기록 내용을 주의깊게 대조하여 보았고, 그 결과 양자 사이에는 문구상의 차이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공식속기록에는 피의사실로 기재된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사용된 「...라고 한다」 라는 표현은 신문보도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또한 원래 공식 속기록의 진술내용과는 달리 위 보도내용에 의하면, 그 문장이나 문구의 순서나 배치가 바뀌어

있어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다 깊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표제로 실어져 있다. 그리고 당해 판사는 위 Hobbs 가 체포되었을 때와 위 대배심에 회부되었을 때, 자기의 혐의 사실을 극력 부인한 사실을 말하였으나, 위 신문보도는 이 점도 생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고찰해야 할 것은 사안의 실체이다. 이러한 법정모욕죄가 구성되기 위하여서는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것을 의도하여 보도하는 경우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위 보도가 그 어떠한 악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없고, 위 보도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만이 강조되고 있다. 쟁점은 원래의 속기록에 나타난 문장의 일부를 발췌하여 대문자로 기사의 표제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위 판사가 위 Hobbs 가 유죄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일반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공식속기록에 기재된 위 판사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증거는 특이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나는 감히 말하건대 이것은 당신들, 배심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 위 Hobbs 가 범죄사상 전무후무한 대규모 과립치사기단의 일당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되어 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문장에 의하여 일반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뜻은 무엇일까? 아무리 괄호 속의 문구인 「이것은 당신, 배심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이라는 부분을 포함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 문장은 위판사가 사안의 진상은 밝혀질 수 있다고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혐의자인 위 Hobbs는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그의 의견을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 괄호 안의 문구를 생략하였다 하여 전체의 뜻이 달라 질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 피의사실 그 자체인데, 위 피의사실을 보도한 신문을 처벌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기전에, 장차 자기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소추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그들이 결정하여야 할 평결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행하여지고 있다. 이 경우 판사의 의견표명은 배심원들에게 예단을 주어 범죄 혐의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판사는 언어표현을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그대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신문측이 처벌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속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